

EU 유기농업 정책의 개혁과정 분석 및 시사점*

김 태 연**

An Analysis on the Challenge and Reforming Processes of the EU Organic Food and Farming Policy

Kim, Tae-Yeon

The EU recently adopted the policy for organic food and farming, Even though the EU enacted a regulation for organic farming in 1991, there has been no formal policy for supporting organic farming in the EU. This may mean that the EU regards the organic food and farming as an important sector for the future of European farming. Therefore, this study firstly explores the development processes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EU organic food and farming policy, and then summaries the priorities of the EU organic food and farming sector. These were reflected to make up an action plan and a new regulation for the EU organic food and farming. The main features of the recent change in the EU policy would be the application of comprehensive perspective for dealing with organic food and farming issues.

Key words : *organic food policy, organic production, european action plan*

I. 서 론

이론적·실제적인 면에서 유기농업의 발전을 선도한 국가들은 유럽의 독일, 영국, 스위스 등이며, 이들 국가에서 주로 선구적인 농민들을 중심으로 20세기 초반부터 유기농업에 관한 이론과 농법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일반 농업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해 왔던 것과는 달리 유럽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즉,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시작한 각종 식품안

* 이 연구는 2006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전사고와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인식 및 식품수요 패턴의 변화가 계기가 되어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EU에서는 유기농산물 생산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각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유기농산물 가공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각종 시책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1987년에 덴마크가 처음으로 유기농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Lampkin et al., 1999). 이러한 개별 회원국의 정책에 대응해서 EU는 1991년에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표시에 관한’ EU 규정 2092/91(CEC, 1991)을 도입하여 회원국간 또는 회원국내 유기농산물의 시장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당시 유기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제기된 신뢰와 투명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Lampkin et al., 1999).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EU 내에서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유럽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CAP)의 일환으로 EU 차원에서 유기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시장관리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서 직접적으로 유기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1992년 ‘전원유지와 환경보호에 필요한 농업생산방법에 관한’ 규정 2078/92(CEC, 1992)의 도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EU 유기농업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시책은 농업환경정책(agri-environmental scheme)이지만 이 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유기농업 실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추가 생산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유기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지원, 농가 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 규정의 한계는 여전히 EU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또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기농업 분야에만 한정해서 적용되는 유기농업 지원정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EU에서 2007년에 유기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834/2007(CEC, 2007)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규정 2092/91(CEC, 1991)을 개정한 것이지만 최근 EU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을 토대로 EU는 향후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말까지 구체적인 유기농업 발전정책이 없었던 EU가 이러한 포괄적인 정책을 형성한 이유와 그 개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U 유기농업 정책의 과거와 현재 규정의 변화를 세세히 살펴보는 것도 현재 유기농업 발전의 기로에서 있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정책적 규정이 제기되기 까지 논의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유기농업 정책의 변화와 발전에 좀 더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보다 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최근 큰 변화를 보인 EU 유기농업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유기농업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II. EU 유기농업의 현황

유럽의 유기농업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EU 통계자료(CEC, 2002)에 따르면, EU에서 인증하고 있는 유기농가는 1985년에 약 6,300호이고 경작면적은 약 10만ha 이었다. 이는 당시 EU 전체 경작지의 0.1%에 불과한 수치였다. 그러나 2001년에 EU의 유기농가는 약 15만호, 경작면적은 450만ha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EU 총 농경지의 3.3%, 총 농가 수의 2.3%를 차지하는 수치였다. 즉, 15년 동안에 유기 농가는 약 25배, 경작면적은 약 4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표 1> 유기농 경작면적과 변화율

국 가	유기농 경작면적(2005)(ha)	증감률(2004/05)(%)
벨 기 에	22,994	- 3
덴 마 크	134,129	- 13
독 일	807,406	5
스 페 인	807,569	10
프 랑 스	560,838	5
이 태 리	1,069,462	12
네 덜 란 드	48,765	1
오스트리아	360,369	5
핀 란 드	147,587	- 9
스 웨 덴	222,268	1
영 국	608,952	- 12
EU-15개국	5,350,604	4
EU-25개국	6,115,465	6

자료 : Eurostat, 2007

EU 유기농업의 최근 변화상황을 보면,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총 경작면적에서 유기 경작지의 비중은 2005년에 약 4%로 증가추세에 있다. 회원국별 현황을 보면, 오스트리아는

2005년에 총 경작면적의 11%가 유기농 경작지로 그 비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기존 EU 15개 회원국에서 유기농 생산물과 농민의 수는 약간 증가하고 있었으나, 그 추세는 북유럽 국가들과 남부유럽 국가들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즉, 남부유럽 국가들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EU 25개 회원국 총 유기농 경작지의 약 18%를 점하고 있는 유기농 경작지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이고, 2004년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 중에는 체코가 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영국,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와 같이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유기농 경작지가 감소한 것은 자국 내 유기농업 지원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기농산물 생산에 따른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유기농법의 적용을 포기하고 다른 환경관련 지원을 받는 농법으로 전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환경농업정책을 적용하면서 유기농산물 생산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유기농업의 적용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유기식품 시장규모

	유기식품 판매액(백만\$)	총 식품판매액 대비 비중(%)
영 국	1,700	1.8
독 일	3,000	2.0
이 태 리	1,000	1.3
프 랑 스	1,250	1.3
네 델 란 드	450	1.3
벨 기 에	225	1.3
오스트리아	350	2.3
스 위 스	750	3.5
덴 마 크	350	2.5
스 웨 덴	375	1.5
유럽 총계	11,000	2
미 국	13,000	2.3
세 계 총 계	26,000	2.0

자료 : CEC, 2004, 8p.

유기농산물 공급의 증가와 함께 유기식품 시장도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현재 시장의 규모나 가격에 관한 EU차원의 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추산에 따르면 농산물 시

장에서 유기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회원국별로 0.5%(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에서 5%(덴마크)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CEC, 2004). OECD의 통계에 근거하고 있는 <표 2>를 보면, 2000년 전 세계 유기식품 판매액이 26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중 유럽이 110억 달러, 미국이 130억 달러 정도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국가별 총 식품판매액에서 유기식품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유럽에서는 스위스가 3.5%로 가장 높으며 유럽 전체로는 약 2% 정도의 비중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시장 규모는 유기식품 분야가 국가별로 연간 약 15~30% 정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며 농업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을 나타내고 있다.

III. 유기농업정책의 개혁과정과 특징

EU는 1957년 6개 회원국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거대한 연합체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다른 정책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기농업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서도 오랜 기간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되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전반적인 개혁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EU 차원의 유기농업 지원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즉, 회원국의 자체적인 정책 이외에 EU 차원의 유기농업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01년 덴마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EU 유기농업 지원정책의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회원국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유기농업 시장발전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견을 토대로 2001년 6월 EU 농업각료회의에서 유기농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의 구체적인 협의내용(CEC, 2002)은 첫째, 유기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둘째, 기존 유기농업에 관한 EU 규정 2092/91이 중요한 출발점이었음을 각국 장관이 동의하였고, 셋째, 농촌발전에 관한 EU 규정 1257/1999(CEC, 1999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시행하는 농촌발전프로그램으로 유기농업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넷째는, 무엇보다도 유기사료의 표시, 유기생산의 감독과 통제, 유기축산 규정의 시행을 위한 현재의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것에 동의하였고, 다섯째, 유럽지역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여섯째, 유럽지역에서 유기농산물의 생산·가공·교역·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EU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회원국, EU 집행위원회, 기타 관련기관 및 단체들이 간의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유기농업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초안을 작성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각료이사회회의 협의 내용에 대해 각 회원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EU 차원에서 실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002년에 EU 집행위원회에서 EU 유기농업 발전의 필요성과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EU 실행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보고서(CEC, 2002)를 발표하였다. 이 문헌을 토대로 2003년에 EU 유기농업 정책의 향후 전개방향에 관한 12가지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로 EU 내 유기농업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여기에 총 1,136명의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였다(CEC, 2003). 이후 2004년 1월에 EU는 각 회원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제기했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실제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2004년 6월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EU 차원의 실행계획(CEC, 2004)이 수립되었으며 2007년 6월에는 기존의 2092/91을 개정한 ‘유기농업 및 식품의 생산과 표시를 위한’ EU 규정 834/2007이 채택되었다.

한편, EU가 유기농업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정도는 유기농업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각종 정책자료에 나타나 있다. 우선, 1999년 농업각료회의는 CAP에서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기농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농촌발전을 위한 규정인 1257/1999(CEC, 1999a)에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반적 원칙은 만약 농민이 GAP의 기준 보다 더 많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유기농업, 저투입농법, 특정한 지역적 생산방법 등과 같은 농업생산방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CEC, 1999, 80p)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2001년 6월 EU는 스웨덴의 예테보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U의 전략(CEC, 2001)을 채택하였다. 이 예테보리 전략에 따른 시행지침 중에 CAP는 유기농업이나 기타 친환경적인 농법의 도입을 장려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량보다는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2002년 발표된 제 6차 EU 환경실행 프로그램에 따르면, “좀 더 환경적으로 책임성 있는 농업을 장려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좀 더 조방적인 농법, 통합적인 농법, 유기농법, 농학적 생물다양성 방법 등이 포함된다.”(CEC, 2002)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3년 CAP 개혁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기농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시장지향성을 강화하며, 좀 더 효과적인 소득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 둘째, 소비자의 수요에 좀 더 적절히 반응하고,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개선하며, 농촌발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셋째, 환경과 동물복지 기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명확한 체계를 형성하여 환경적 지속성을 제고하는 것 등이다.

결국,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주장과 협의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유기농업 정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로 제기된 것은 EU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목적에 유기농업이 부합한다는 점이다. 즉,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나 농민의 소득보다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유기농업이 행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유기농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농업소득의 증가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는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현황 및 실행방안 분석

한 국가가 일정한 분야의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분야의 현황과 지금까지의 정책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EU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EU는 한 국가가 아니라 25개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체라는 특성상 그 진행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각 단계마다 명확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EU가 현재 유럽 유기농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해결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EU가 유기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분석한 결과와 향후 전략을 살펴보고 이것이 이후 실제 정책적 지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유기농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분석

1) 총괄적 개선방향

유기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고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 생산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EU가 유기농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생산과 가공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생산과 관련해서는 유기농업이 ‘과거 50여년 전의 일반농업이라는 생각을 바꾸고 첨단기술 농업임을 명확히 할 필요’(CEC, 2002)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종자개

량, 가축사육,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등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 기계를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유기농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농가의 참여를 높이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유기농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가공분야에도 적용되어서 현재 일반식품의 맛, 색, 품질보존, 운송 등의 분야에 적용되는 각종 기술과 기계가 유기식품 생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EU 회원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증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유기농산물에 관한 EU의 기준과 법적 정의는 사실상 1991년 EU 규정 2092/91호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EU의 기준보다 높은 규정을 자국내 유기농산물에 적용하고 있고 또 민간단체들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자체 회원농가를 인증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EU의 법적기준은 포괄적인 개념만을 제시할 뿐 실제 소비자 신뢰와 연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Lampkin et al., 1999). 이러한 기존 규정을 문제점을 받아들여서 EU에서는 우선적으로 EU 내 민간 또는 회원국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관련 업체 및 기관들의 주도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CEC, 2002). 즉, EU 차원의 인증기준 제시는 회원국 및 관련 단체들의 협력에 따른 인증기준의 설정 후 EU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명확히 부각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의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기관 주도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현실과 비교해 볼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는 GMO 농산물에 대한 수용여부이다. GMO와 관련해서는 이미 1999년 EU 규정 1804/1999(CEC, 1999b)에서 “GMO 또는 GMO를 원료로 만든 재료는 유기적 생산방법과는 다르므로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품이나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작물의 경작·수확·운송·저장·가공과정에서 ‘우연적 혼합(ad mixture)’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생산과정에서 GMO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과 유기농법에서 GMO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규 사이의 현실적인 균형이 필요하다(CEC, 2002)는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론적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현실적 한계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종 유기농산물 생산에 관한 비현실적 규정과 관련해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 시장활성화 과제

1990년대 이후 유기식품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EU 내 유기식품 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유기식품의 시장 확대에 지속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

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U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CEC, 2002). 첫째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U의 지금까지 경험과 각종 연구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은 건강, 맛, 환경, 동물복지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부가해서 EU는 유기식품시장이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유기식품의 기타 긍정적인 측면 즉, 환경, 오염저감, 지역생산물이라는 측면에서도 좋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장기적인 유기식품 시장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인식을 정책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인식변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가격과 비용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기식품은 일반식품에 비해 품질이 좋고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실제 그 가격이 비싼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싼 가격에 따른 이득의 대부분은 농민보다는 가공 및 유통업체로 귀속되고 있는데, 이는 유통물량이 일반식품에 비해 적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CEC, 2002). 즉, 가격결정의 근거가 되는 비용구조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단체급식의 확대와 관련된 사항이다. 유기식품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체급식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그 확대를 가로막는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i) 조리방법과 메뉴 변경에 따른 비용문제, ii) 기존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유기식품을 구입하거나 생산자가 대규모 물량 공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iii) 공급업체의 변경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이다. 결국, 단체급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급식 담당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정보제공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CEC, 2002). 이 점은 현재 우리나라 단체급식이 당면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넷째는 유기식품에 관한 통계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EU 차원에서 유기농산물 생산면적, 농민 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는 회원국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유기식품 시장 정보 즉, 교역량 및 가격에 관한 정보는 회원국별로 통일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EU 차원에서 유기농업, 식품, 시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점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통계구축의 필요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EU 지역 내 교역 활성화 과제

EU는 25개 회원국간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EU 이외 지역과의 교류 못지 않게 지역 내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EU 유기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EU는 지역 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회원국간 인증규정의 불일치성과 EU로고의 사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CEC, 2002).

인증규정의 불일치성 문제는 1991년 유기농산물에 관한 EU의 법적 규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유기농산물의 인증은 대부분 독립적인 민간단체의 인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실제 이러한 각 지역 민간단체의 인증은 주로 해당 지역의 특성 즉, 소비자의 선호, 생산조건, 생산자의 선호, 지역적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 또는 국가별로 인증규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1991년과 1999년에 유기농산물에 관한 EU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회원국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실제 민간단체, 회원국, EU 기준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EU 지역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준을 파악하고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CEC, 2002).

한편, 이러한 개별 회원국간의 신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고려하고 있는 것이 EU 로고의 적용문제이다. EU의 유기식품 인증로고는 실제 1999년 도입되었지만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EU 회원국간 인증에 대한 상호 신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EU 인증로고를 사용하여 유기식품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인식과 소비를 제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 온 민간인증 로고의 유용성을 훼손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CEC, 2002).

이와 같은 국가간의 인증기준 격차 및 신뢰문제와 EU로고의 사용 문제는 EU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인증기준 자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이 너무 원칙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고, 또 지역별로 차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인증과 민간인증의 두 가지 체계로 분리될 경우 각각의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인증비용에 대한 문제를 정책의 개혁과정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검역 및 검사체계 개선 과제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수입검역 체계, 검사기관 인정체계, 생산자 인증체계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수입검역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EU 인정과 수입국 인정 등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검역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EU로 수입되는 유기농산물의 대부분이 수출국의 현지 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EU 인정체계 보다는 사안별로 회원국의 검역절차를 통해서 수입되는 수입국 인정체계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CEC, 2002).

EU에서 이러한 수입검역 절차를 개선하려는 의도는 표면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사안별 검역에 따른 수출국과 수입국의 비용이 유기식품의 가격을

높이는데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EU로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안전성을 포괄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EU 생산자를 보호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EU와 동등한 수준의 유기식품 생산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만을 수출국으로 인정함으로써 EU 식품기준을 세계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고 또 지역 내 유기식품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EU의 변화는 점차로 EU와의 식품분야 교역이 증대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회원국간 유기식품 검사기관의 인정기준의 차이에 따른 문제이다. EU의 회원국들은 자체적으로 유기식품 검사기관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이들 검사기관에 대한 별도의 감독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즉, 개별 검사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를 상호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EU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검사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및 감독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CEC, 2002).

셋째는 생산자 인증기준과 절차에 관한 문제이다. EU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농민, 가공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생산규모별로 어떻게 그 검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대규모 생산자들이 저렴한 검사비용과 수월한 검사기관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량과 규정위반 위험도를 기준으로 차별적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CEC, 2002).

이와 같은 검사기관과 생산자 인증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실제 이러한 인증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외국사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신용광·황윤재, 2007). 이 과정에서 EU의 인증체계 개선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현재 EU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합과 분리, 포괄적 적용과 차별적 적용은 사안별로 적용되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방법이 일률적으로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5) 연구 및 교육의 강화 과제

유기식품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EU에서는 이러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CEC, 2002). 첫째는 현장 농민, 연구자, 기타 관련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고 둘째는 다른 회원국과의 협력이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현장 생산자와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간의 협력은 미진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유기식품에 관한 국가간 협력연구가 매우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은 현장 농민에 대한 전문가의 유기식품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컨설팅이다. 이러한 컨설팅은 연구 성과를 현장에 확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농민교육이나 농민들간의 경험 및 기술교류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을 탈피해서 유기농업의 경우는 생산 및 경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가 향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유통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는 것과 함께 궁극적으로 지역적 공급체인의 형성 및 발전(즉, 지산지소)에 그 목표를 두고 유기식품 생산지역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CEC, 2002).

이러한 연구개발과 교육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 관행농업에 있어서도 연구자, 농민, 관련 기관 전문가간의 협력이 매우 미진한 실정이며, 실제 농업전문기관의 컨설팅조차도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주체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연구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기식품 지원계획 분석

2000년 이후 일련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EU는 2004년에 유기식품의 발전을 위한 21가지 실행계획(Action Plan)(CEC, 2004)을 채택하였다. 이 실행계획은 크게 유기식품 시장확대를 위한 활동, CAP 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활동,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준 및 검사체계 개선활동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분야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시장수요 확대 전략

유럽 내 유기식품 시장수요의 확대를 위해서는 총 3가지 실천과제가 선정되었다. 첫 번째 실천과제는 EU 규정 2826/2000의 내용을 수정하여 EU 집행위원회가 유기농업에 대한 정보 및 홍보 활동을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몇 년 동안 EU 차원에서 정보 및 홍보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소비자, 공공기관 급식소, 학교 그리고 기타 식품체인 상의 주요 활동가들에 유기농업의 장점 특히, 환경적 혜택에 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EU의 유기농산물 인증 로고를 포함해서 소비자들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급식소나 잠재적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및 홍보 활동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 전문기관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실천과제는 유기식품에 관한 EU 차원의 기준, 회원국과 민간단체의 기준 그리고 외국의 다양한 기준에 대한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형성·관

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는 것이 세 번째 실천과제로 선정되었다.

이 시장수요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들은 앞서 설명한 시장활성화 과제와 지역 내 교역 활성화 과제의 일부가 반영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행계획이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급식에 필요한 정보를 식품체인상의 담당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보취급 기관을 신설하기 보다는 식품체인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성과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번 실행계획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유기식품 용어를 사용하고, 실제 유기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을 포함한 유기식품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유기농산물 관련 규정(2092/91)이 농산물만에 한정해서 적용했던 것에 비해 그 개념이 매우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CAP 정책과의 연계

유기식품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한 과제로서 총 네 가지 실천과제가 선정되었다: i) 유기농 과일과 채소 생산자단체에 대한 EU 지원금 이외에 각 회원국의 추가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 ii) 유기농업 분야에서 생산, 유통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웹사이트에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 iii) 유기농업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iv) 각 회원국에서 유기농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존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특히, 네 번째 실천과제와 관련해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유기농업 지원시책 내용

-
- 새로운 품질보증시책을 이용하여 수요를 진작시키는 것
 - 장기적으로 환경과 자연보호 측면의 혜택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는 것
 - 일부가 아닌 전체 경작지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한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 일반 생산자들처럼 유기농산물 생산자들도 자본투자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식품체인 관련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과정을 통합시킴으로써 유기농산물의 분배 및 유통을 활성화하여 생산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기타 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
 - 유기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포괄하는 유기농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 환경민감지역(ESA)과 같은 지역에 중요한 토지관리방법으로써 유기농업을 선정하여 장려하는 것.
-

이러한 CAP 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실행계획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기식품의 원료가 되는 유기농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CAP의 농업보조금이 기존에 주로 곡물과 축산물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 유기농 채소와 과일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부족했던 채소 및 과일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기식품의 원료로서 채소와 과일부문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3) 안전성 기준 및 검사체계 개선

EU 차원에서 유기식품에 대한 검사 및 인증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총 14개의 실천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실행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농업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의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한 규정을 수립하고(실천과제 8), 유기농업 기준의 완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실천과제 10)으로 이에 따른 세부적인 활동으로는 i) 허용되는 첨가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과 축산가공품에 대한 지원을 제공, ii) 유기농 와인에 대한 특별규정 수립 여부 고려, iii) 동물복지에 관한 기준의 개선, iv) 수산물 양식업과 같은 분야로의 확대 필요 여부 고려, v) 에너지, 생물다양성, 경관 및 기타 환경과 관련된 기준 개선의 필요성 고려하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기술적 조언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을 형성하는 것(실천과제 11)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둘째, EU 규정 2092/91에서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개정할 것(실천과제 12)을 선정하였다. i) GMO 원료를 포함한 생산물을 유기 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 ii) 종자 이외에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된 원료에 우발적으로 GMO가 포함되었을 경우의 최소 기준은 일반 농산물 표시의 최소기준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것 등이다. 한편,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종자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 시행할 것인가의 여부가 현재 EU 집행위원회에서 고려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셋째, 둔갑이나 사기 위험도가 높은 생산자를 적발하기 위한 위험-중시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도입하고 규정 2092/91에 따른 상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기관의 활동성을 개선하는 것(실천과제 13)으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다른 실천과제와 연계되어 있다. 즉, 유기농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본채택 및 분석방법을 개발하는 현재의 통합연구센터(JRC) 활동을 지속하는 것(실천과제 14), 각 회원국에서는 CAP에서 형성된 필지별 증명을 유기농업에 사용된 토지의 위치 및 점검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실천과제 15), 규정 2092/91에 따른 검사기관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검사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협력을 제고하는 것(실천과제 16), 규정 2092/91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특정한 인증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실천과제 17) 등이다. 이와 함께 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이 제출한 인가된 검

사기관의 수와 형태 등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연차보고서를 발행(실천과제 18)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안전성 및 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은 유기식품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기존 유기식품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대부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실행계획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이전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그대로 적용하여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너무 급하게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유기농업 규정의 개정

EU는 2007년 6월에 기존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표시에 관한’ 규정 2092/91(CEC, 1991)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규정 834/2007(CEC, 2007)을 도입하였다. 앞서 밝힌 것처럼 규정 2092/91은 당시 유기농산물에 대한 EU의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신뢰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유기농산물의 생산기준, 표시, 검사시스템과 무역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규정 834/2007는 유기식품 산업 및 시장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기식품 생산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농업생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해초류, 양식 포함)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규정, 가공식품과 가공사료 그리고 첨가제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법안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법안의 목적, 즉 유기적인 생산방법을 장려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농업생산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관리방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 형성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및 자연자원의 책임성 있는 활용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고품질 농식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셋째, 소비자의 선호에 맞도록 환경, 인간, 동식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된 다양한 농식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특징적인 내용만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GMO와 관련된 원료는 여전히 유기식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단지 GMO가 우연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0.9%까지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유기식품에 대한 개념을 통일하기 위하여 회원국 내에서 EU 유기식품 로고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할 경우 회원국 또는 민간단체의 로고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민간단체의 인증기준은 EU 기준보다도 더 엄격해도 상관없고, 식품 성분함량의 95%가 유기원료면 유기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외식업체에 대한 규정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지

만 회원국이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2011에 EU 차원의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생산지 및 원산지 표시를 필수표기 사항으로 도입하는 것과 양식업, 와인, 해초, 이스트에 관한 유기생산 규정을 신설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2000년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EU의 유기식품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유기식품과 관련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 채택된 규정 834/2007은 1차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과 사료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해조류와 양식업에 대한 유기적 생산방법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장기간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유기식품 시장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과 규정이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여러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EU의 특성상 회원국의 불만과 반대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EU 집행위원회, 회원국 정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관련분야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은 EU 정책의 특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요와 공급의 증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유럽 내 유기식품 시장규모를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의 제공과 인증 및 검사기준의 개선이 모두 이러한 수요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는 CAP에서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농민들이 유기농법을 채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유기식품 관련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유통문제의 해결에 EU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식품 시장규모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단지 시장에 맡겨서는 유기식품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기계의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EU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유기식품이 일반식품에 비해 높은 유통비용이 소요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좀 더 효과적인 유통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연구를 EU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유기식품 시장의 발전이 단순히 농업과 식품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EU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모토아래 EU 정책과 회원국의 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EU의 최근 유기농업 정책변화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유기식품의 정책대상을 현재의 1차 농산물에서 가공품과 수산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유기식품의 인증기준과 검사체계에 관한 홍보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의 유기식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즉, 유기농산물 인증표시뿐만 아니라 인증기관과 인증과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유기식품 시장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EU는 이러한 연구개발예산을 각 회원국이 전체 농림기술 예산에서 일정한 비율로 확정하고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현재 유기식품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고려하고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유기식품 관련 단체 및 기관 간의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EU의 실행계획과 법규들은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기식품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단체 및 기관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논문접수일 : 2008. 11. 19. 논문수정일 : 2008. 12. 12. 최종논문접수일 : 2008. 12. 27.]

참 고 문 헌

1. CEC, 1991, Council Regulation(EEC) No 2092/91 of 24 June 1991 on organic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indications referring thereto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198, 22. 7. 199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2. CEC, 1992, Council Regulation(EEC) No 2078/92 of 30 June 1992 on agricultural production methods compatibl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maintenance of the countrysid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215, 30. 7. 199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3. CEC, 1999, Council Regulation(EC) No 1257/1999 of 17 May 1999 on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from the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and

- amending and repealing certain Regulation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160, 26.6.199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4. CEC, 1999, Council Regulation(EC) No 1804/1999 of 19 July 1999 supplementing Regulation (EEC) No 2092/91 on organic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indications referring thereto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to include livestock productio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160, 26.6.199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5. CEC, 2001, A Sustainable Europe for a Better World: A European Union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M (2001) 264 final, 15.05.200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6. CEC, 2002, Analysis of the possibility of a European Action plan for organic food and farming,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SEC(2002)1368, 12.12.200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7. CEC, 2002, Decision No 1600/2002/ 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July 2002 laying down the Sixth Community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242, 10.9.200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8. CEC, 2003,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online consultation: Action Plan for organic food and farming,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9. CEC, 2004, European Action Plan for Organic Food and Farming,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EC(2004) 739, 10.06.200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10. CEC, 2004, European Action Plan for Organic Food and Farming, COM(2004) 415 final, 10.06.200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11. CEC, 2007, Council Regulation(EC) No 834/2007 of 28 June 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2092/9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189, 20.7.200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12. Eurostat, 2007, Different organic farming patterns within EU-25, Statistics in Focus: agriculture and fisheries, 69/2007, European Communities.
 13. Lampkin, N., C. Foster, S. Pader & P. Midmore, 1999, The Policy and Regulatory Environment for Organic Farming in Europe, Hohenheim.
 14. 신용광·황윤재. 2007.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 R559. 한국농촌경제연구원.